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정주형 해양경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관·학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정주형 해양경찰 전문인재 인재양성으로 장기적인 지역 및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호혜 및 협력의 원칙에 따라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에 의한 지원·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협력 분야)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재학생 현장체험·현장실습 및 강의 지원
2. 학술정보·자료교환 및 교육시설·기자재 공유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해양경찰 관련 자격증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5. 기타 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주관 부서) 본 협약의 이행을 담당할 주관부서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관광경영학과·대기환경과학과·수산생명의학과·체육학과·해양생태환경학과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를 각각 지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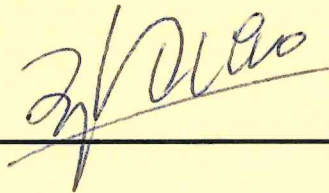
제7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용 부담) 업무협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6년 2월 11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 박덕영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인창

